

---

2020년

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---

2021. 3.



**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**
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## 순서

I. 산출 기준 .....	1
II. 지역별 ·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.....	2
II-1. 전체 사건 .....	2
II-2. 일반 사건 .....	3
III. 용어 정의 .....	4

# I. 산출기준

## □ 산출 기준

- 본 통계 자료는 2020. 1. 1. ~ 2020. 12. 31.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
-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, 기준 및 단위는 오른쪽 위에 표시함.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

- '-':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

- '일반 사건'은 피신청인에 대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사건에 대한 통계(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8항, 이하 의료분쟁조정법)이며, '전체 사건'은 위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\*을 갖추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9항)의 계수를 합친 통계임

\*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## II. 2020년 지역별·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

### II-1. 전체 사건

(2020.1.1. ~ 2020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계	상급종합	종합병원	병원	의원	치과병원	치과의원	한방병원	한의원	기타**	
계	개시	1,435	342	376	263	239	17	114	9	28	47
	각하	764	116	156	143	247	6	66	6	14	10
	개시율	65.3	74.7	70.7	64.8	49.2	73.9	63.3	60.0	66.7	82.5
서울	개시	453	149	79	56	101	3	41	5	8	11
	각하	276	48	45	48	100	2	23	4	5	1
	개시율	62.1	75.6	63.7	53.8	50.2	60.0	64.1	55.6	61.5	91.7
경기	개시	283	34	86	69	53	4	21	2	7	7
	각하	149	20	41	24	44	0	15	0	2	4
	개시율	65.5	63.0	67.7	75.0	54.6	100.0	58.3	100.0	77.8	63.6
인천	개시	90	18	37	13	13	1	3	-	1	4
	각하	30	11	3	2	8	0	4	-	1	1
	개시율	75.0	62.1	92.5	86.7	61.9	100.0	42.9	-	50.0	80.0
부산	개시	142	32	27	44	20	0	10	0	3	6
	각하	82	13	13	21	25	1	6	1	0	2
	개시율	63.4	71.1	67.5	67.7	44.4	0.0	62.5	0.0	100.0	75.0
경남	개시	95	24	27	18	10	3	6	-	2	5
	각하	40	0	18	9	8	1	3	-	0	1
	개시율	70.4	100.0	60.0	66.7	55.6	75.0	66.7	-	100.0	83.3
울산	개시	25	7	7	5	4	0	0	-	2	-
	각하	11	1	1	3	4	1	1	-	0	-
	개시율	69.4	87.5	87.5	62.5	50.0	0.0	0.0	-	100.0	-
대구	개시	60	28	7	13	2	2	4	-	1	3
	각하	41	10	3	10	11	0	6	-	1	0
	개시율	59.4	73.7	70.0	56.5	15.4	100.0	40.0	-	50.0	100.0
경북	개시	33	-	22	6	2	-	0	-	1	2
	각하	16	-	4	2	8	-	1	-	1	0
	개시율	67.3	-	84.6	75.0	20.0	-	0.0	-	50.0	100.0
광주	개시	40	12	13	7	3	2	2	1	-	-
	각하	13	2	2	1	7	0	1	0	-	-
	개시율	75.5	85.7	86.7	87.5	30.0	100.0	66.7	100.0	-	-
전북	개시	33	6	8	3	5	-	7	-	0	4
	각하	16	2	3	5	4	-	0	-	1	1
	개시율	67.3	75.0	72.7	37.5	55.6	-	100.0	-	0.0	80.0
전남	개시	27	3	11	8	3	-	1	-	-	1
	각하	12	1	4	3	3	-	1	-	-	0
	개시율	69.2	75.0	73.3	72.7	50.0	-	50.0	-	-	100.0
제주	개시	11	-	5	0	1	-	3	-	-	2
	각하	6	-	1	1	3	-	1	-	-	0
	개시율	64.7	-	83.3	0.0	25.0	-	75.0	-	-	100.0
대전	개시	48	9	20	11	3	0	3	1	1	-
	각하	29	4	8	8	3	1	1	1	3	-
	개시율	62.3	69.2	71.4	57.9	50.0	0.0	75.0	50.0	25.0	-
충남	개시	39	10	6	3	10	2	7	-	-	1
	각하	17	0	2	2	12	0	1	-	-	0
	개시율	69.6	100.0	75.0	60.0	45.5	100.0	87.5	-	-	100.0
충북	개시	22	5	4	5	4	-	2	-	1	1
	각하	16	3	6	3	3	-	1	-	0	0
	개시율	57.9	62.5	40.0	62.5	57.1	-	66.7	-	100.0	100.0
세종	개시	3	-	-	-	3	-	-	-	-	-
	각하	2	-	-	-	2	-	-	-	-	-
	개시율	60.0	-	-	-	60.0	-	-	-	-	-
강원	개시	31	5	17	2	2	-	4	-	1	-
	각하	8	1	2	2	2	-	1	-	0	-
	개시율	79.5	83.3	89.5	50.0	50.0	-	80.0	-	100.0	-

\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 개시건수 + 각하건수 ) × 100 \*\* 요양병원, 약국, 보건소, 보건의료원

## II-2. 일반 사건

(2020.1.1. ~ 2020.12.31.(접수일) 기준, 단위: 건, %)

구분		계	상급 종합	종합 병원	병원	의원	치과 병원	치과 의원	한방 병원	한의원	기타**
계	개시	996	181	226	193	213	17	113	8	26	19
	각하	764	116	156	143	247	6	66	6	14	10
	개시율	56.6	60.9	59.2	57.4	46.3	73.9	63.1	57.1	65.0	65.5
서울	개시	331	84	48	42	95	3	41	5	7	6
	각하	276	48	45	48	100	2	23	4	5	1
	개시율	54.5	63.6	51.6	46.7	48.7	60.0	64.1	55.6	58.3	85.7
경기	개시	192	14	42	52	49	4	21	2	7	1
	각하	149	20	41	23	44	0	15	0	2	4
	개시율	56.3	41.2	50.6	69.3	52.7	100.0	58.3	100.0	77.8	20.0
인천	개시	72	10	32	11	12	1	3	-	1	2
	각하	30	11	3	2	8	0	4	-	1	1
	개시율	70.6	47.6	91.4	84.6	60.0	100.0	42.9	-	50.0	66.7
부산	개시	94	17	11	34	17	0	10	0	3	2
	각하	82	13	13	21	25	1	6	1	0	2
	개시율	53.4	56.7	45.8	61.8	40.5	0.0	62.5	0.0	100.0	50.0
경남	개시	68	14	18	15	7	3	6	-	2	3
	각하	40	0	18	9	8	1	3	-	0	1
	개시율	63.0	100.0	50.0	62.5	46.7	75.0	66.7	-	100.0	75.0
울산	개시	18	5	4	4	3	0	0	-	2	-
	각하	11	1	1	3	4	1	1	-	0	-
	개시율	62.1	83.3	80.0	57.1	42.9	0.0	0.0	-	100.0	-
대구	개시	39	16	4	8	2	2	4	-	1	2
	각하	41	10	3	10	11	0	6	-	1	0
	개시율	48.8	61.5	57.1	44.4	15.4	100.0	40.0	-	50.0	100.0
경북	개시	18	-	15	2	0	-	0	-	1	-
	각하	16	-	4	2	8	-	1	-	1	-
	개시율	52.9	-	78.9	50.0	0.0	-	0.0	-	50.0	-
광주	개시	26	4	9	7	1	2	2	-	-	1
	각하	13	2	2	1	7	0	1	-	-	0
	개시율	66.7	66.7	81.8	87.5	12.5	100.0	66.7	-	-	100.0
전북	개시	17	2	4	2	3	-	6	-	0	0
	각하	16	2	3	5	4	-	0	-	1	1
	개시율	51.5	50.0	57.1	28.6	42.9	-	100.0	-	0.0	0.0
전남	개시	16	3	5	4	2	-	1	-	-	1
	각하	12	1	4	3	3	-	1	-	-	0
	개시율	57.1	75.0	55.6	57.1	40.0	-	50.0	-	-	100.0
제주	개시	7	-	3	0	1	-	3	-	-	-
	각하	6	-	1	1	3	-	1	-	-	-
	개시율	53.8	-	75.0	0.0	25.0	-	75.0	-	-	-
대전	개시	30	3	13	6	3	0	3	1	1	-
	각하	29	4	8	8	3	1	1	1	3	-
	개시율	50.8	42.9	61.9	42.9	50.0	0.0	75.0	50.0	25.0	-
충남	개시	29	5	4	1	10	2	7	-	-	-
	각하	17	0	2	2	12	0	1	-	-	-
	개시율	63.0	100.0	66.7	33.3	45.5	100.0	87.5	-	-	-
충북	개시	13	1	2	3	4	-	2	-	-	1
	각하	16	3	6	3	3	-	1	-	-	0
	개시율	44.8	25.0	25.0	50.0	57.1	-	66.7	-	-	100.0
세종	개시	2	-	-	-	2	-	-	-	-	-
	각하	2	-	-	-	2	-	-	-	-	-
	개시율	50.0	-	-	-	50.0	-	-	-	-	-
강원	개시	24	3	12	2	2	-	4	-	1	-
	각하	8	1	2	2	2	-	1	-	0	-
	개시율	75.0	75.0	85.7	50.0	50.0	-	80.0	-	100.0	-

\* 개시율 : 개시건수 ÷ ( 개시건수 + 각하건수 ) × 100 \*\* 요양병원, 약국, 보건소, 보건의료원

## II. 용어 정의

### ① 의료분쟁 관련 용어 정의

#### ○ 조정

-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하도록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하며, 재판 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36조)

#### ○ 중재

-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(私法) 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,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44조)

#### ○ 조정 절차 개시

-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고,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각하함(「의료분쟁조정법」 제27조제8항)
- 다만, '16.11.30.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의 대상이 사망, 1개월 이상 의식 불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급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에 조정절차는 개시됨

### ② 보건의료기관 종별 유형 정의

#### ○ 상급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

1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2. 「의료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
3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 것
4.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4제1항 및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별표)

#### ○ 종합병원

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함

1.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
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
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(「의료법」 제3조의3제1항)

#### ○ 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#### ○ 의원

-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#### ○ 치과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치과의원

-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한방병원

-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 중 주된 진료과목이 한의과인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한의원

-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(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)

○ 요양병원

- 30개 이상의 요양병상(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)을 갖추고 환자를 진찰,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추어 놓은 곳(「의료법」 제3조의2)

○ 약국

-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[약국제제(藥局製劑)를 포함한다]를 하는 장소(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)를 말함. 다만,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예외로 함(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)

○ 보건소(보건지소)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·군·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으로서, 보건소의 지소를 보건지소라 함(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)

○ 보건의료원

- 보건소 중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말하며,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함(「지역보건법」 제8조)